

4.4.21 산학협력단 연구원 임용 관리지침

제정 2019. 12. 17.

제1조 (목적) 이 지침은 초당대학교 산학협력단 연구원의 임용 및 인건비 지급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산학협력단 연구원”이란 산학협력단 각종사업 및 연구과제수행을 위해 계약에 의하여 한시적 기간과 목적을 정하여 산학협력단장이 임용하는 자를 말한다. 단, 연구사업의 특성상 총장 임용이 필요한 경우에도 본 규정을 적용한다.

제3조 (자격) 연구원 자격요건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책임연구원 : 박사학위 또는 기술사 자격 취득 후 5년 이상의 연구경력, 또는 석사학위 취득후 해당분야 12년 이상의 경력자, 또는 학사학위 취득 후 해당분야 15년 이상의 경력을 가진 자, 또는 기타 동등 이상의 경력 소유자
2. 박사후연구원 : 임용예정일 기준 박사학위 취득 후 5년을 넘지 않은 자 또는 3개월 이내의 박사학위 취득예정자
3. 전임연구원 : 박사학위 취득 또는 기술사 자격 취득자, 또는 석사학위 취득 후 해당분야 7년 이상의 경력자, 또는 학사학위 취득후 해당분야 10년 이상의 경력을 가진 자, 또는 기타 동등 이상의 경력 소유자
4. 일반연구원 : 박사과정 재학생 또는 석사학위 소지자, 또는 학사학위 취득 후 해당분야 5년 이상의 경력을 가진 자, 또는 기타 동등 이상의 경력 소유자
5. 연구보조원 : 석사과정 재학생 및 학사학위 취득자, 또는 위 요건에 해당되지 않더라도 연구능력이 인정되어 연구수행에 필요한 자

제3조 (연구원 직급 및 소속) ① 연구과제 수행에 따라 연구원의 직급을 부여할 수 있다.

② 연구원의 소속은 산학협력단으로 하며, 필요에 따라 연구소 또는 사업단(센터)으로 할 수 있다.

제4조 (임용절차 및 임용서류) ① 연구원은 연구책임자의 추천으로 산학협력단장과 계약에 의하여 임용한다.

② 연구책임자는 다음 각 호의 임용서류를 산학협력단에 제출하여야 한다.

1. 임용신청서(별지 제1호 서식)
2. 근로계약서 1부(별지 제2호 서식)
3. 이력서 1부
4. 학위증명서 각 1부
5. 경력증명서(해당시) 1부
6. 주민등록증, 초본 각 1부
7. 개인정보수집 · 이용 · 3자제공동의서(별지 제5호 서식)
8. 급여수령계좌사본

제5조 (임용기간) ① 연구원의 임용기간은 1년 단위를 원칙으로 하되, 연구사업 및 과제기간에 따라 산학협력단장이 별도로 정할 수 있다.

- ② 연구원을 재임용하고자 할 경우에는 임용기간 만료 30일 전까지 산학협력단에 임용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6조 (계약) 산학협력단장과 연구원은 고용계약을 체결하며, 연구원은 4대보험에 가입한다.

제7조 (급여) ① 연구책임자는 연구원 임용 신청 시 인건비 재원을 사전에 확보하여야 한다.

- ② 연구원의 월지급액은 지원기관의 예산편성 지침을 우선적으로 적용한다.

- ③ 지원기간의 지침이 없는 경우 본교의 인건비 지급기준을 적용한다.

제8조 (계약변경) ① 다음 각 호의 사유로 계약변경 시 연구책임자는 변경 30일 전까지 산학협력단에 연구원 임용 변경 신청서(별지 제3호 서식)를 제출한다.

1. 참여율 변경에 따른 월급여 변경
2. 임용기간의 변경
3. 인건비 재원 과제 변경
4. 기타 변경

제9조 (면직) ① 연구원의 면직은 면직 15일 전까지 산학협력단에 연구원 면직 신청서(별지 제4호 서식)와 사직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 ② 임용기간이 만료되었으나 재임용 요청이 없을 시에는 별도의 통지 없이 자동 면직된다.

- ③ 사업의 중단 또는 연구과제의 예산 부족으로 인건비지급을 유지할 수 없을 시에는 계약기간 중이라도 중도 면직할 수 있다.

제10조 (퇴직금) ① 연구원의 임용 시 인건비 재원에 퇴직금을 확보하여야 한다.

- ② 연구원이 1년 이상 근속하고 퇴직하는 경우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의거하여 퇴직금을 지급한다.

- ③ 1년 미만으로 근무하고 퇴직한 경우, 월 퇴직적립금을 중도퇴직 정산하여 퇴직수당으로 지급한다.

제 15조 (발명자 보상금의 지분)

제11조 (직무발명보상금) ① 직무에 관련하여 창출한 지식재산권 등으로 발생한 수입이 있을 경우 연구원에게 직무발명보상금을 지급한다.

- ② 연구과제수행으로 인해 발생한 직무발명보상금은 연구원의 기여율에 따라 지급한다. 또한 연구원의 기여율은 연구원 평가서(별지 제6호 서식)를 바탕으로 운영위원회에서 심의 결정한다.

1. 기여율 100% : 금액의 30%
2. 기여율 90% : 금액의 20%
3. 기여율 70% : 금액의 10%
4. 기여율 70% 미만 : 지급금 없음

- ③ 기타 직무보상금 지급에 관한 사항은 산학협력단 직무발명규정에 따른다.

제12조 (기타) 이 지침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산학협력단장이 따로 정한다.

부 칙

- ① (시행일) 이 지침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연구원 임용신청서

1. 인적사항

성명	한글 :		영문 :	
생년월일			국적	
주소			연락처	
학력	학위명	취득일		취득기관
	학사			
	석사			
	박사			
경력	기간	부서		직위
	. . . ~ . . .			
	. . . ~ . . .			
	. . . ~ . . .			

2. 참여과제(사업)명

	연구과제명(과제번호)	연구책임자	연구기간	인건비예산	비고
과제1					
과제2					

3. 임용요청내역

요청내역	직급	임용기간	과제번호	참여율	인건비 내역 (단위 : 원)				인건비 총액
					월급여	4대보험 (기관)	월 퇴직금	계	
☐ 신규임용 ☐ 재임용	석사급 연구원	2017.03.01 ~ 2018.02.28 (12개월)	A2017-1111	50%	1,500,000	148,000	125,000	1,773,000	21,276,000

※ 4대보험 기관부담금은 월급여의 9.873%책정(천원단위 미만금액 반올림)
: 추가금액 발생 시 연구과제에서 추가 계상

위와 같이 연구원 임용을 신청합니다.

20 년 월 일

연구책임자 : (인)

초당대학교 산학협력단장 귀하

연구원 근로계약서

초당대학교 산학협력단장과 연구책임교수를 [동]이라 하고 연구원을 [행]이라 하여 양자 간에 다음과 같이 의하고 근로계약을 체결한다.

제1조(계약당사자) 계약당사자는 다음과 같다.

동 (1) 주 소 : 전남 무안군 무안읍 무안로 380
직위 및 성명 : 산학협력단장 송 환
(2) 소 속 : OO대학 OO학부
직위 및 성명 : 교수 ○ ○ ○
행 성 명 : ○ ○ ○
생 년 월 일 : 0000.00.00

제2조(신분 및 업무내용) “행”은 근로계약기간 동안 『 00지원기관 000사업 』(이하 “해당사업”이라 한다)에 참여하는 연구원으로서 연구관련 업무 및 근로와 관련하여 연구책임교수의 지시에 대하여 성실하게 이행하여야 한다.

제3조(근로계약기간) ① “행”의 근로계약기간은 201 년 00월 00일부터 201 년 00월 00일까지로 한다.

② 유기사업 또는 특정 프로젝트 완성(연구비 수주)을 위해 고용된 경우

– “행”은 해당사업 『 연구과제명(과제번호) 』의 운영 및 완성을 위해 고용된 근로자이다.

해당사업기간은 본 근로계약기간과 별개로 인지하며, 1항에도 불구하고 해당사업이 중단 또는 조기 종료되거나 사업기간이 만료된 경우 본 근로계약도 당연 만료되는 것에 동의하십니까? (예 / 아니오) 서명

③ 근로계약 체결 이후 본 근로계약기간 내에 타 연구과제 참여가 있는 발생된 경우에는 근로계약서를 별도로 작성한다.

제4조(근로시간, 휴가) ① “행”의 기본근로시간은 1일 8시간, 1주 40시간으로 한다.

② “행”의 근로형태는 평일은 9시부터 18시까지, 휴게시간은 12시부터 13시까지이며, 토요일은 무급휴무일, 일요일은 주휴일을 원칙으로 한다.

③ “행”이 제5조 4항에 따라 기간별로 지급받는 임금이 상이한 경우에는 최저임금법에 따라 연구책임교수와 상의하여 근로시간을 탄력적으로 조정할 수 있다.

④ “행”의 연차유급휴가는 근로기준법에 의한다.

제5조(임금 및 지급방법) ① “동”은 “행”에게 계약기간 동안 총 ()원을 보수로 지급하며, 임금은 계약 후 매월 20일에 예금통장에 입금 지급한다.

② 임금에는 연차·휴일·연장근로수당이 합산되어 지급되며, 연차·휴일·연장근로수당 등의 상세내역은 임금내역표에 명시한다. (단, 재원은 연구과제에서 충당함)

③ 제3조의 3항의 경우에는 과제 참여율을 적용하여 임금을 산정함을 원칙으로 한다.

④ 연구과제 예산 집행 계획에 따라 기간별 임금이 상이한 경우에는 다음 계획에 따라 지급한다.

구분	참여기간	월 급여	구분	참여기간	월 급여
1	0000.00~0000.00	0,000,000 원	2	0000.00~0000.00	0,000,000 원
3	0000.00~0000.00	0,000,000 원	4	0000.00~0000.00	0,000,000 원

제6조(퇴직연금) “동”은 계약기간의 만료 시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의거하여 퇴직금을 “행”에게 지급한다. (단, 재원은 연구과제에서 충당함)

※ 단, 퇴직금은 계약기간 1년이 충족된 경우에 한하여 지급한다.

※ 지원기관의 규정 및 지침이 있으면 위 내용과는 별도로 정하여 명시한다.

제7조(근무장소) “행”의 근무장소는 초당대학교 ()로 한다.

제8조(근태관리) “행”의 근태관리는 연구책임교수가 한다. 연구책임교수는 “행”의 연구지도 및 업무 감독을 성실히 수행하여야 하며, 근로계약에 관한 내용에 변경이 있거나 기타 계약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즉시 산학협력단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9조(의무) ① “행”은 학내 제규정을 준수하여 성실히 복무하여야 함은 물론, 연구원으로서의 품위를 유지하여야 한다.

② “행”은 연구전념을 위하여 교내 강의는 주당 6시간 이내로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부득이 한 경우 연구진행에 지장을 초래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연구책임교수 책임 하에 일부 조정할 수 있다. 교외 강의는 주당 3시간 이내로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동”의 승인 없이 타 기관에 출강할 수 없다.

③ “행”은 “동”의 승인 없이 영리 또는 보수를 목적으로 하는 업무에 종사하거나 다른 직무를 겸직할 수 없다.

④ “행”은 근로계약기간 동안 “동”이 지정하는 장소에서 상근하며, “동”은 업무상 필요가 있을 경우, 근무장소 및 업무내용을 변경할 수 있으며, “행”은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거부하지 못한다.

제10조(중도 사직) “행”이 계약기간 만료 이전에 중도 퇴사할 경우 최소한 1개월 전에 사직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사직서 제출 후 1개월 경과 시 “동”과 “행”간의 고용계약은 종료된 것으로 본다.

제11조(계약의 갱신, 변경 및 해지) ① 본 계약은 근로계약기간 종료 1개월 전까지 “동”과 “행”의 합의에 의하여 갱신할 수 있으며, 갱신하지 않는 경우에는 근로계약기간의 만료로써 이 계약은 효력을 상실한다.

② “동”은 해당사업의 지원기관으로부터 연구비 지원이 중단 되거나 조기 종료 등의 사유로 연구비가 변경된 경우 계약 내용의 일부를 변경할 수 있다.

③ “행”은 다음 사항에 해당될 때에는 본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1. “행”이 제9조의 의무를 지키지 아니할 때
2. 근로계약 시 제출한 각종 증명서 또는 업적 실적물에 허위 사실이 있을 때
3. 신체·정신상의 이유로 업무를 수행하기 곤란할 때
4. 연구원으로서의 품위를 손상하여 본교 명예를 훼손한 때
5. 연구업무를 성실히 준수하지 아니한 때
6. 법령, 규정 및 업무상 지시를 위반하였을 때
7. 지원기관의 사업 중단 또는 특별한 사유로 지원기관의 사업에 참여할 수 없을 때

제12조(연구결과물 귀속) “행”의 연구결과물에 대한 소유권은 본교에 귀속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제13조(손해배상) “행”이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동”에게 손해를 초래하였을 경우 “동”은 “행”에게 실비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제14조(기타) 이 계약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해서는 초당대학교 및 산학협력단 제규정, 근로기준법 등 근로관계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이 계약서는 2부를 작성하여 계약 당사자가 각 1부씩 보관한다.

20 년 월 일

동	(1) 초당대학교 산학협력단	단장	○ ○ ○	(인)
	(2) 연구책임교수	교수	○ ○ ○	(자필서명)
행	박사후연구원		○ ○ ○	(자필서명)

연구원 임용 변경 신청서

1. 임용변경 대상자 :

2. 변경항목

☐ 참여율(월급여) ☐ 임용기간

〈변경전〉

임용일자	직급	임용기간	과제 번호	참여율	인건비 내역 (단위 : 원)				인건비 총액
					월급여	4대보험 (기관)	월 퇴직금	계	
2017.03.01	석사 급 연구 원	2017.03.01 ~ 2018.02.28 (12개월)	A2017-1111	50%	1,500,000	148,000	125,000	1,773,000	21,276,000

〈변경후〉

변경일자	직급	임용기간	과제 번호	참여율	인건비 내역 (단위 : 원)				인건비 총액
					월급여	4대보험 (기관)	월 퇴직금	계	
2017.06.01	석사 급 연구 원	2017.03.01 ~ 2017.05.31 (3개월)	A2017-1111	50%	1,500,000	148,000	125,000	1,773,000	5,319,000
		2017.06.01 ~ 2018.02.28 (9개월)	A2017-1111	50%	1,500,000	148,000	125,000	1,773,000	15,957,000
			A2017-2222	10%	300,000	30,000	25,000	355,000	3,195,000

위와 같이 연구원 임용 변경을 신청합니다.

20 년 월 일

연구책임자 : (인)

초당대학교 산학협력단장 귀하

연구원 면직 신청서

1. 면직대상자

이름 (개인번호)	생년월일	소속	임용기간	면직일자	면직사유
홍길동 (IACF0000)	85.02.10	OOO 연구실			

2. 퇴직급여

퇴직적립금	지급처(계좌)	비고

붙 임 : 사직서 1부

위와 같이 연구원 면직을 신청합니다.

20 년 월 일

연구책임자 : (인)

초당대학교 산학협력단장 귀하

<붙임>

사 직 서

소속 :

성명 :

상기 본인은 “ 지원기관 ” “ 000000000사업 ”에 참여 중 “개인사정 or 계약기간 만료 or 사업중단”으로 인하여 0000년 00월 00일부로 사직하고자 사직서를 제출합니다.

0000년 00월 00일

000 (인)

초당대학교 산학협력단장 귀하

연구원 연구평가서

인 적 사 항					
성명				소속	
최 초 연수일	20		연수기간	20 ~ 20 (년차)	
연수분야 (과제명)					
평 가					
평가기간 : 년 월 일 ~ 년 월 일 (년차)					
연구실적 평가	평가항목		배점		평가점수
			최고	최저	
	1	연구성과의 우수성 - 논문, 특허 등 연구실적의 질적·양적 수준	25	15	
	2	연구 과제 기여도 - 해당 참여 과제의 기여실적	25	15	
	3	과제 수행의 성실도 - 과제 수행의 적극성, 책임성, 상호 협조성	25	10	
	4	향후 발전 가능성 - 연수기간 갱신 이후에도 과제 능력, 자기발전 및 능력향상 가능성	15	5	
	5	구성원과의 융합성	15	5	
	합계 (* 평가요소별 점수를 각각 기입한 후 합계액 산출)				
평가자 의견 :					

위와 같이 평가함.

년 월 일

평가자	(직책 또는 직급)	(성명)	(인)
-----	------------	------	-----